한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
(제정) 2006.02.09 조례 제1692호 (일부개정) 2008.08.11 조례 제1814호 (일부개정) 2008.12.12 조례 제1827호 (일부개정) 2019.02.26 조례 제2396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상의 수급자가 아닌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8.11, 2008.12.12., 2019.2.26.>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저소득주민"이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의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 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.[전부개정 2008.12.12]<개정 2019.2.26.>
- 제3조(지원대상) ①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천군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세대로 한다. <개정 2008.12.12., 2019.2.26.>
 ② 제1항의 국민건강보험료지원 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**제4조(대상자 선정)** 제3조제1항의 지원대상자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받아 군수가 결정한다.

[전부개정 2008.12.12]

- **제5조(지원시기)** <개정 2008.12.12>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. <개정 2008.8.11. 2008.12.12>
- 제6조(조사실시)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자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의 자산상황,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12.12>
- 제7조(예산 확보 및 지원)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.
- 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08. 8.11 조례 제181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08.12.12 조례 제182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조례 제2396호 2019.2.26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